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1994. 3. .

발 의 자 : 김영수의원외 5인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위원정수를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함.
- 달서구의회 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 운영과 심사의 능률을 향상 시킴과 아울러 상임위원회간의 상호협조체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 사회도시위원회의 간사를 당연직으로 구성함으로써 위원회간의 의견수렴의 폭을 넓히고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협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
- 상임위원회 간사를 운영위원에 추천토록 단서규정 신설

3.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안)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중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운영위원회 10명

제9조(위원의 선임) 제1항의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의장이 운영위원을 추천할때에는 상임위원회 간사를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4.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2 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p> <p>1. 내무위원회 12명</p> <p>2. 사회도시위원회 13명</p> <p>3. 운영위원회 8명</p> <p>제 9 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결로 선임한다.</p> <p>(단서신설)</p> <p>② (생략)</p>	<p>제 2 조(상임위원회 설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운영위원회 10명</p> <p>제 9 조(위원의 선임) ① (단, 의장이 운영위원을 추천한때에는 상임위원회 간사를 포함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